

광주지방법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단55347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-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4. 3. 1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2024. 4. 11. 접수 제562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(무변론판결)

판사박상수

별지